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84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김승원 · 민병덕 · 김남근
박지원 · 권철승 · 김종민
한병도 · 강준현 · 문대림
이건태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 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지급정지) 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인

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9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제21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급정지의 종료)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용계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가 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9조(지급정지) 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u>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인

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
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급정지의 요청·절차·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0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9조에 따
라 지급정지가 된 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급정지
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
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
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
납절차의 개시

<신 설>

4. 질권(質權)의 설정

제21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지급정지의 종료)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가 이용계좌가

<u>제19조</u> ~ <u>제21조</u> (생략)	<u>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u> <u>3.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명의인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u> <u>제23조</u> ~ <u>제25조</u>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